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29249호, 2018. 10 .23.)」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의 산정기준(단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청 소관 사유시설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개정

- 1) 연도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확정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을 개정하고자 함.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249호, 2018. 10 .23.)」 제4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부처협의 : 완료

라. 기 타 : 고시 개정사항 별첨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일부개정

산림청고시 제2018-104호

2018년 12월 26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산림청 소관 사유시설)

품목별	규격	단위	단가(원)	비고
○ 산림시설 복구	표고재배사(표준모델 표고양묘)	m ²	27,008	
	표고재배사(툽밥배지 표고양묘)	m ²	44,931	
	대추비가림-개량형(개폐기없음)	m ²	6,605	
	대추비가림-개량형(수동개폐기)	m ²	6,827	
	대추비가림-연동형(자동개폐기)	m ²	8,899	
	대추비가림-우산형(수동개폐기)	m ²	9,738	
	대추비가림-우산형(자동개폐기)	m ²	10,162	
○ 임업시설 철거비	(필요할 경우)	지수	재난지수의 10%	
○ 대과대(산림작물 복구)	표고자목(1.2m)	본	3,139	
	잔디(과종생산비)	m ²	1,459	
	조경수분재(묘목기준)-조경수	m ²	5,806	
	조경수분재(묘목기준)-분재	m ²	5,806	
	유실수(묘목기준)-밤	m ²	107	

품목별	규격	단위	단가(원)	비고
	유실수(묘목기준)-대추	m ²	199	
	유실수(묘목기준)-뽕은감	m ²	175	
	유실수(묘목기준)-호두	m ²	322	
	유실수(묘목기준)-은행	m ²	284	
	야생화(종자대, 비료대)	m ²	894	
	산림작물(묘목기준)-약용류	m ²	1,505	
	산림작물(묘목기준)-복분자	m ²	655	
	산림작물(묘목기준)-머루	m ²	1,750	
	산림작물(묘목기준)-다래	m ²	1,560	
	산림작물(종자대)-도라지	m ²	1,003	
	산림작물(종자대)-더덕	m ²	1,058	
	산림작물(종자대)-두릅	m ²	1,847	
	산림작물(종자대)-취나물	m ²	690	
	산림작물(종자대)-산양삼	m ²	3,337	
	산림작물(종자대)-약초류	m ²	939	
	산림작물(중근대)-표고톱밥배지	m ²	19,103	
○ 농약대	병해충방제(산채류)	m ²	76	
	병해충방제(수실류)	m ²	110	
	병해충방제(산양삼, 약초류)	m ²	78	
	병해충방제(약용류)	m ²	85	
	병해충방제(야생화)	m ²	329	

제3조(재검토기한) (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8. 12. 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